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145

발의연월일: 2021. 8. 20.

발 의 자: 박광온 · 전혜숙 · 이낙연

이장섭 · 임호선 · 홍성국

윤영찬 · 김진표 · 송갑석

김영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중소기업에 대하여 2020년 발생한 결손금에 대한 직전연 도의 사업소득에서 일정 부분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 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해당 결손금 환급 특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2020년 및 2021년 발생한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의 환급 범위를 직전 3개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확대함으로 써 중소기업의 경제난 극복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인이 2020년 12월 31일 또는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제1호의 금액을 한도로 제2호의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을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 결정세액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에 따라 계산한"으로 하고, 같은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8조의4제2항 중 "2개월"을 "2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환급대상기간"으로, "직전 과세연도"를 "직전 3개 과세연도"로 한다.

제8조의4제5항제2호 중 "2020년 12월 31일"을 "환급대상기간"으로, "직전 과세연도"를 "직전 3개 과세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의4에 따라 환급을 받은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8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내국인이 제8조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제8조의4(중소기업의 결손금 소 제8조의4(중소기업의 결손금 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①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 과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해당 과세 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 는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 금이 발생한 경우 제1호의 금 액을 한도로 제2호의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1.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 결정세액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과세연도의 법인세액

환급 신청할 수 있다.

2. 직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 <삭 제> 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 액(「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개 아 정

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인이 2020년 12월 31일 또는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3개 과세 에서 "환급대상기간"이라 한다) 연도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 | 소득 결정세액 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삭 제>

 × 6 ÷ 직전 과세연도의 개월

 수(이 경우 개월 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

 한 금액에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5조제

 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6 ÷ 직전 과

 세연도의 개월 수

직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 (소급 공제를 받으려는 환급대상기간의 결손금 상당액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6)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인은 환급대상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해당 내국인이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및 제7

<삭 제>

(2)

<u>2년</u>
③ (현행과 같음)
4

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작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제1호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환급한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징수한다.
- 1. (생략)
- 2.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u>직전</u>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소득세법」 제80조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
- 3. (생략)
-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

<u>환급대</u>
<u>상기간</u>
직전 3개 과세연도
,
⑤
1. (현행과 같음)
2. <u>환급대상기간</u>
<u>직전 3개 과세연</u>
<u>E</u>
3. (현행과 같음)
< 삭 제 >

3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지급받은 내국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정산하여 추가로 환급(「소득세법」 제85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라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 한정한다)하거나 징수한다.

- 1.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내국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85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라 계산된 환급세액과 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과의 차액
- 2.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지 않은 내국인의 경우: 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
- ① 제1항부터 <u>제6항</u>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결손금 소급공 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7) <u>제5</u>	<u>ठ</u> ी